

광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나751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나7519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5373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기복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연

변론 종결 2024. 9. 27.

판결 선고 2024. 11. 2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537328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에 2020. 7. 3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8. 4. 접수 제1423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42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김경중

판사이지영

별지